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
공 시 최 고

사 건 2008년 단560 실종선고
청 구 인 김 명 열 (690324-*****)
주 소 통영시 미수동 22-1 운하맨션 1005
등록기준지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123
사건본인 황 중 근
(부재자) (700129-*****)
최 후 주 소 통영시 미수동 22-1 운하맨션 1005
등록기준지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123

위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아래와 같이 최고한다.

1. 부재자들은 공시최고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.
1. 위 부재자들의 생사를 아는 사람은 공시최고기일까지 신고할 것.
1. 공시최고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.
1. 공시최고기일: 2009. 7. 12. 10:00

2008년 12월 12일

판사 이 준 규